
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

◇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◇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◇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성명			
생년월일		여권번호 (외국인에 한함)	
직업		여행기간	일
여행목적	☐ 여행 ☐ 사업 ☐ 친지방문 ☐ 공무 ☐ 기타		
항공편명		동반가족수	명
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(총 개국)			
1. 2. 3.			
국내 주소			
전화번호 (휴대폰)	☎	()	

세관 신고 사항

- 아래 질문의 해당 □에 "√"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. -

1. 해외(국내외 면세점 포함)에서 취득(구입, 기증, 선물 포함)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(뒷면 1 참조) [총 금액 : 약] *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%(15만원 한도)가 감면됩니다.	있음	없음
2.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	있음	없음
3. 미화로 환산하여 \$10,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(원화·달러화 등 법정통화, 지기앞수표,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) [총금액 : 약]	있음	없음
4. 총포류, 도검류, 마약류 및 헌법질서·공공의 안녕질서·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(뒷면 2 참조)	있음	없음
5. 동물, 식물,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* 축산농가 방문자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	있음	없음
6. 판매용 물품, 업무용 물품(샘플 등),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,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	있음	없음

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 년 월 일
 신고인: (서명)

85mm×210mm[백상지 120g/㎡]

[신고물품 기재란]

☞ 술·담배·향수(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)

술	()병, 총 ()L, 금액 US \$()
담배	()갑(20개비 기준) 향수 ()mL

☞ 그 밖의 면세범위(US \$600) 초과 물품

품명	수(중)량	금액

1. 휴대품 면세범위

☞ 술·담배·향수

술	담배	향수
1병 (1L 이하로서 US \$400 이하)	200개비	60mL

*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.

☞ 기타 물품

US \$600 이하
(자가 사용, 선물용,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)
* 다만, 농림축산물,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,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.

2.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

- ☞ 총포(모의총포)·도검 등 무기류, 실탄 및 화약류, 방사성물질, 감청설비 등
- ☞ 메트암페타민·아편·헤로인·대마 등 마약류 및 오·남용 우려 의약품
- ☞ 헌법질서·공공의 안녕질서·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
- ☞ 위조(가짜)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, 위조지폐 및 위·변조된 유가증권
- ☞ 웅담, 사향, 녹용, 약어 가죽,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

3. 검역 대상 물품

- ☞ 살아있는 동물(반려견 등) 및 수산동물(물고기 등), 고기, 육포, 소시지, 햄, 치즈 등 육가공품
- ☞ 흙, 호두, 장뇌삼, 송이, 망고·오렌지·체리 등 생과일, 견과류 및 채소류

※ 유의사항

-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「관세법」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가치, 가산세 부과(납부세액의 40%,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%),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.
-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☎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